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88호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6- 413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시송달(동녘지구 소3-1 호선 도로개설공사) 2
- 공고 제2016- 420호 2016년도 제2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 공고 제2016- 4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공고 제2016- 439호 『2016년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주관단체 제공모 13
- 공고 제2016- 443호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1
- 공고 제2016- 4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6- 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32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6- 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남 동 구 보 건 소 공고 제2016- 15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46

고 시

- 고시 제2016- 28호 도로명주소 고시 47
- 고시 제2016- 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1차) 고시 공고 5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6-413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동넉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 3.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동넉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6. 3. 14 ~ 2016. 3. 29(15일간)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이 *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437번길 **, ***호 (연수동)	18996-8502-7924	반송	수취인불명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420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2016년 제2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3.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와 명칭 :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 03. 14 ~ 03. 30(16일간)
4. 열람내용 : “붙임”과 같음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토지)

사업명 :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²)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한국감정원	가온감정	양천감정			
1	서창동	66-2	전	전	5.0	5.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이인숙	
2	서창동	66-3	전	전	21.0	21.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3	서창동	66-4	전	전	6.0	6.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4	서창동	66-5	전	전	9.0	9.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5	서창동	66-1	전	전	52.0	52.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소 계				93.0	93.0				0		
	합 계				93.0	93.0				0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물건)

사업명 :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고
	동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수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한국감정원	가온감정	양천감정			
1	서창동	66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1.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이인숙	
	소계								0		
	합 계	0									

의견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의견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4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에서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14조제4항)
 -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 →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31조제4항)
 - 강구하여야 → 마련하여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951, FAX 453-58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3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에서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14조제4항)
 -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 →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1조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담당부서의 장으로”를 “업무 담당국장으로”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u>담당부서의 장으로</u>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 ⑥ (생략)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업무 담당국장으로</u> ----- ----- ----- ----- -----.
제31조(독서문화 진흥)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u>강구하여야</u>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1조(독서문화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마련하여야</u> ----- -----.
	⑤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439호

『2016년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주관단체 공모 공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교환함으로써 자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녹색소비 실천에 앞장서기 위하여 개최하는 『2016년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행사를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관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공모내용**

『2016년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 주관 단체 선정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16년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16년 11월 30일
- 다. 운영주관 : 민간단체 위탁 운영
- 라. 운영횟수 : 2회 (상반기 5월21일, 하반기 10월22일)
- 마. 사 업 비 : 8,000천원(4,000천원 × 2회)

3. 신청할 수 있는 단체

-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나. 제외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기타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4. 제출서류

가. 나눔장터 운영 주관단체 공모신청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단체현황개요 등 각 1부.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세부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단체현황개요 등은
서면과 메일(kainhot5@korea.kr)로 함께 제출

5.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3. 21 (월) ~ 4. 4 (월)

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6층 청소과)

다. 문의전화 : 청소과 자원재활용팀 (☎032-453-2564)

라.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2016. 4. 4.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지원사업 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심사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청단체 면접 병행

나. 선정기준 :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

다. 결과발표 : 남동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운영단체 위탁계약 체결후 나눔장터 세부계획 및 보조금 신청시 지
급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사업 운영 단체는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추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계
약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름

8. 기타

- 가. 『2016년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 주관 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협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1차 지원금 지급 후 정산 처리
- 나. 운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붙임 2】

2016년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주관단체 공모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와의관계			연락처		
	주소					
단체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성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실무자성명			전화및휴대폰		
사업비	총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구성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주무부서	《등록번호 : 》				
등록여부	등록일	※ 컨소시엄 구성시 신청서에는 대표단체만 기재후 별첨에 구성단체명 및 등록번호 모두 기재				

『남동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사업을 주관단체로써 참가하기 위하여
나눔장터 운영주체 공모 신청을 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요약서 1부
3. 단체현황개요 1부

7. 사업예산

- 1) 총사업비 : 천원
- 2) 지원예산 : 8,000천원(%)
- 3) 자 부 담 : 천원(%)
- 4) 집행계획

지출항목	금 액	주 요 내 용

- 주1) 지출항목 및 내용은 홍보비, 현장시설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주2)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주3) 총사업비는 지원예산만으로도 가능하며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만 기재하고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님.

단체 현황 개요

□ □ □ □ □ □ □ □ □ □ □ □ □ □ □ □ □ □ □ □

단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전화 :			(담당)							
	FAX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설 립 일 (설립근거)				법인허가 (주무부처)			법인형태			재단(), 사단() 특수(), 기타 미등록()				
연 혁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분야							
주요사업	【 전년도 실적 】						【 당해연도 계획 】							
회 원 수 (단체수)							상 근 자		사무국 : 임원		명, 직원		명	
									지 부 : 임원		명, 직원		명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연령	학력	주 요 경 력				임기	연락처(사.자)				
대 표 자														
조직구성	계	임 원			직 원			회원 (단체)						
		상 임	비 상 임		상 근	비 상 근								
총 계														
중 앙														
지 방														
예 산	수입 :		백만원		지출 :		백만원		결산(과년도) : 백만원					
	- 자체수입 :		백만원		- 운영비 :		백만원							
	- 지원수입 :		백만원		- 사업비 :		백만원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443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자 대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고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6. 3.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 공고기간 : 2016. 3. 18. ~ 4. 1.(14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제공일자 : 2016. 3. 4 ~ 3. 18
5. 제공받는 자 : 아진전산(주)
6. 제공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7.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8.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대상 차량번호, 고지번호, 납부금액, 가상 계좌번호, 생년월일, 단속일자, 위반장소
9.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OCR 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10.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 교통행정과 (☎ 032-453-289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4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8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가. 인천광역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정비 요청 사항과,
- 나. 2015.12.24.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한 재 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 사무 처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화물자동차 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공용차량 사적사용 금지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제1항)
 - 나. 공용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 표시 의무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제2항)
- 단,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수사·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소형화물차 배정 대상에 동 주민센터 추가(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재무과)/전화 453-2271, FAX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및 행정자치부로 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정비 요청 사항과,
- 2015.12.24.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사무 처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화물자동차 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차량 사적사용 금지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제1항)
- 공용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 표시 의무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제2항)
단,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수사·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형화물차 배정대상에 동 주민센터 추가(안 별표1)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3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강화 통보(인천광역시 총무과-18101)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강화(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944)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2(공용차량 표시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차량관리담당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차량관리담당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임차차량 포함)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수사·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공용차량 표시 등) ① 차량 관리담당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u> ② 차량관리담당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임차차량 포함) 외부에 <u>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수사·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별표1]

차종·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제5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 ○ 구의회 의장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이상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차량 최단운행기 간이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 의회사무국 ○ 구 소속기관	
	다목적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 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경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동 주민센터	
승합형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중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소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차량 최단운행기 간이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경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화물용	대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차량 최단운행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 정)
	중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소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동 주민센터	
	경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특수용	청소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구급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진료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분뇨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급수·살수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농림방재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이동수리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트럭트렉타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트레일러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렉카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소방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기타 특수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2015.12.24 조례 제1321호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청소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2.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사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제2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정비와 교통안전 지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개선·정비에 관한 내용 (안 제3조 및 제4조)
- 교통안전 실태 조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반영토록 명시 (안 제5조)
-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6조)
- 교육시설의 장에게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권고 (안 제7조)

○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3,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10
----------	------

발의연월일 : 2016. 3. .

발 의 자 : 이 오 상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의원외 6인

□ 제 안 이 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정비와 교통안전 지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개선·정비에 관한 내용 (안 제3조 및 제4조)
- 교통안전 실태 조사 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마련 (안 제5조)
-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6조)
- 교육시설의 장에게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권고 (안 제7조)
-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 고 자 료

- 「도로교통법」 제12조
-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 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및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곳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곳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도로교통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598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교통안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3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

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678호, 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 공고 제 201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3. 17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추진 일정이 50여일 앞당겨져 6월말까지 의회의 심의·승인 완료가 필요하며,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를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되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안 제3조제1항제1호)
 - 매년 7월 1일 → 매년 6월 7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지방의회의원 총선거

4.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1,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및 관련 협조문서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관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11
----------	------

제출년월일 : 2016년 3 월 15 일

발 의 자 : 문종관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외 8명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추진 일정이 50여일 앞당겨져 6월말까지 의회의 심의·승인 완료가 필요하며,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를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되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안 제3조제1항제1호)
 - 매년 7월 1일 → 매년 6월 7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문
- 상급기관 협조 공문서

남동구의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집회) ① (생 략) 1. <u>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한다.</u> <u>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u> <u>(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u> <u>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또는 10</u> <u>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u> 2. (생 략) ② (생 략)	제3조(집회) ① (현행과 같음) 1. <u>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u> <u>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u> <u>“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u> <u>정례회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u> <u>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2016. 1. 12 개정, 2017. 1. 1 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집회) ① 영 제54조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3조 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문종관 의원(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6-1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04. 0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6. 03. 18. ~ 2016. 04. 0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2- 0199285	돈통마늘보쌈 (논현점)	김채린	논고개로 80, 1층 107,108호 (논현동, 나노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1.15.	2016.4.4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2

2016. 03.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2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35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35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3. 11.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7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35	2009.11.16	행정구역명(도림동)을 이용하여 도림로로 제명	2016.3.1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도림로3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5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공공주택지구	D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55번길	5-16	2014.7.25	선수촌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6.3.1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55번길5-1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16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로	21-4	2009.11.16	연락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6.3.1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연락골로21-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1-4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공공주택지구	D1-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39번길	37	2009.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3.1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호구포로739번길37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7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09번길	39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3.1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논현고잔로109번길3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9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 3번길	35	2016.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 번길	91	2016.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3-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28번길	64	2016.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4	2016.3.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 번길	12-13	2016.3.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 번길	20-1	2016.3.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 도로명주소 폐지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삼마 TOP-Class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삼마종합건설(주) (대표자:윤해중)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29, 4층(서창동)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7-1번지
- 연 면 적 : 10,280.8019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15층, 1개동, 아파트 90세대
- 사 업 비 : 15,085,500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당초 : 2015. 5. 27. ~ 2016. 05. 26.
- 변경 : 2015. 5. 27. ~ 2016. 07. 26.

5.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